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9916
등록일자	2016.5.19.
결재일자	2016.5.20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협조	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			

- 2016. 4. 13.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(가선거구) -
보궐선거관리경비(보전비용) 예산확보 및 집행 계획



행정관리국
자치행정과

보궐선거관리경비 예산확보 및 집행 계획

2016. 4. 13(수) 실시한 중구의회의원(가선거구)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「공직선거법」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궐선거관리경비(보전비용) 집행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선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

관련근거

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 제2항

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공직선거법 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등) 제1항제1호

1.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

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

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련공문

○ 중구의회의원(가선거구)의 보궐선거관리경비(보전비용) 납부 요구
[중구선관위-2261(2016.5.9.)]

II

집행(확보) 내역

□ 후보자별 득표현황(유효투표)

구 분	선거인수	투표자수	박영한 (새누리당)	송 희 (더불어민주당)	김용만 (국민의당)	비고
명 (득표율)	24,947	13,517	5,661 (42.6%)	3,641 (27.4%)	3,997 (30.1%)	

□ 총110,700천원 (2016 예산편성 73,800천원, 예비비 36,900천원)

구 분	경비종류	금액(천원)	예 산	비 고
자치행정과	선거관리, 구의회위원보궐선거지원, 자치단체등이전, 기타부담금	73,800	'16년 예산	
기획예산과	예비비	36,900	예비비	

□ 예비비 필요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유 발생
- 중구선거관위의 보궐선거관리경비 납부 요구

□ 예비비 사용 관련 일상감사 처리의견(감사담당관)

- 실정법상 제약이나 내재적 제약 여부 해당 없음

III

향 후 계 획

□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(→기획예산과)

□ 보궐선거관리경비(준비 및 실시경비) 납부(→중구선거관위)